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62
----------	------

발의연월일 : 2024. 12. 5.

발 의 자 : 황운하 · 김선민 · 김재원
김준형 · 박은정 · 차규근
이해민 · 정춘생 · 신장식
서왕진 · 강경숙 · 조 국
의원(12인)

주 문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수사대
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

1. 헌법 제77조제1항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
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리고 「계엄법」의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
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는 요

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

2. 헌법 제77조제4항 및 「계엄법」 제4조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국회 통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건

3.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항은 국회의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고 있는 바, 헌법 및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선포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의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을 뿐(헌법 제77조제3항), 국회의 권능을 변경하는 그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헌법 제77조제4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계엄법」 제15조)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능에 어떤 제약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점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및 「계엄법」에 위반하여 국회와 정당의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항을 작성, 공포한 사건

4. 윤석열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정세에 대한 심각한 망상적 오판으로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목현태 등과 통모작당하여 내란죄를 저지른 사건

5.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내란죄에 적극 가담하며 윤석열, 이상민, 박안수, 목현태 등과 통모 작당하여 내란죄를 저지른 사건

6.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 치안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의 내란행위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하였고, 구체적으로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등에게 지시하여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진, 정당 관계자, 언론관계자, 일반 시민의 국회출입을 경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저지한 사건

7. 비상계엄 직후 1공수여단 소속 병력이 완전무장한 채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하고,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특수임무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국회 인사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비상계엄 요구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사건

8. 「계엄법」 제11조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4일 오전 1시경 국회가 계엄해제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오전 4시 27분에 이르러서야 비상계엄을 해제한 사건

9.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안이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음.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헌법 제66조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임.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함.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방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 폭거임.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前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반민주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정치 정상화에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무시하고 이에 반하는 위헌적 대통령령을 제정하였으며, 국회가 가결한 법률에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킴과 동시에,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을 통해 비판적 여론을 억압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파괴하였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적 정의·기소와 수사 외압·무마 등으로 최소한도의 법치주의 원칙조차 파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비밀이 되었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라는 치명적인

국민적 배신을 감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배우자의 범죄혐의를 감추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고, 검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법치주의를 무너뜨렸음.

이런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통하여 밝혀진 대선 시 여론 조작,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김영선 공천 개입 및 이를 통한 수수 뇌물액에 상응하는 공천 보답 의혹이 확산되었고, 부인 김건희가 명태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육성이 공개되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대통령 직위의 정당성이 붕괴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않은 채 여전히 부인의 잘못을 옹호하고, 명태균 의혹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자초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긴급하고 비상한 헌법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헌법이 정해둔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에 대한 검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자 하였음.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을 선포

또한 이후 군병력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 본청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여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 했음.

우리 법은 내란죄에 대하여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사정기관을 동원해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 및 측근들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막아왔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내 위험적인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전혀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로 모든 수사기관들을 장악해 온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매우 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및 12·12 군사반란과 그에 이은 5·18 광주학살의 비극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헌정체제에서,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및 군사반란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기에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함.